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6월 12일

나. 제출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6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6월 21일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 구 연

나.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소비자의 역할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소비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 예산조치 : 2018년 예산에 64,340천원 반영되었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영 수

○ 본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구미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의 역할, 시장의 책무, 구미시 물가모니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